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3.

발의자 : 김형동 · 박상웅 · 조경태

우재준 · 한지아 · 김미애

김석기 · 안철수 · 윤상현

박정하 · 이종배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범인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(안 제64조제1항).

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